##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89

발의연월일: 2021. 2. 25.

발 의 자:배준영·박상혁·김용판

김정재・金炳旭・정찬민

정운천 • 곽상도 • 유의동

이해식 • 박덕흠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

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, 수집된 자료의 공개,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안정적인 통계조사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, 수집된 자료의 제공,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8조).

##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. 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평생교육 통계조사 등) ①・	제18조(평생교육 통계조사 등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
	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
	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
	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
	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
	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
	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
	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
	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
	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
	따라야 한다.
<u> &lt;신 설&gt;</u>	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
	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
	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
	수 있다. 이 경우 「교육관련기관
	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
	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
	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	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
	제공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
	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 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 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